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

**2024. 2.**

**국 토 교 통 부  
철도투자개발과**



# 목 차

I. 과업 개요 .....	1
II. 과업 주요내용 .....	2
III. 과업수행 지침 .....	3
I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8
V. 보안대책 .....	9
VI. 예정공정표 .....	13
VII. 제안서 작성지침 .....	14
VIII. 용역사 선정방법 .....	16
IX.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19

## I 과업 개요

### 1. 과업명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 마련 연구

### 2.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된 자기부상철도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운영방식 전환 절차를 추진 중\*(‘22.4~)

\* 「자기부상철도 운영 진단 및 대안 마련 연구용역(‘20.11~’21.11, 교통연)」 결과 ‘궤도시설’로의 운영 방식 변경(도시철도→궤도)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

- 기존 용역에서 경제성, 운영 환경 등을 분석하여 대안을 도출, 협약 등 체결 과정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검토하여 체계적·안정적인 관리 체계 마련 추진

\* 도시철도→궤도 전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검토사항, 기관 간 역할, 비용 체계 등

### 3. 용역비(설계금액) : 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4. 용역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로 함

###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통계 등 기초자료는 2024년을 기준연도로 하며,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 과업 착수시점 기준 최신자료를 활용
- (공간적 범위)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 (내용적 범위) 자기부상철도 궤도 전환에 따른 궤도 운영 관련 국내 법령 및 사례 조사, 궤도 운영 세부 방안 검토·분석, 소유·운영 유지관리 협약 및 관련 계약 검토 지원 등

## 6.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 과업 주요내용

### 1 궤도 운영 관련 국내 법령 등 조사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궤도 운영 시 적용 필요한 국내 법령 및 기준, 지침, 관련 용역 등 조사 및 분석

### 2 궤도 운영 국내 사례 조사

- 궤도 운영 국내 사례 및 사례별 운영 방식 등 조사

### 3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관리위탁 세부 방안 검토·분석

- 관련 법령 및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궤도 관리 위탁 등 추진에 필요한 세부 방안 등 검토
- 기존 각 기관의 역할 변화(궤도운영주체 등),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체계 등 법률적 검토 등

- 유지보수, 개량 비용 등 도출 비용 현행화

#### 4] 소유·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관련 계약 검토·지원

- 상기 조사·분석 내용과 기존 협약의 보완이 필요 사항 등을 검토하여 소유·운영 및 유지관리 신규 협약(안) 및 관련 계약(안) 마련
- 협약, 관련 계약 체결을 위한 기타 행정사항 지원 등

※ 전문가 자문, 법률 검토 등 포함

### III 과업수행 지침

---

#### 1. 일반지침

-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본 과업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6)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7)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과업보고

- 1)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 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2) 중간보고(회) : 계약 후 6주차(1회차) 이내에 보고한다.
-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전에 보고한다.
-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3. 세부과업지침

### 1)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 4) 자문회의 및 유관기관 협의회 등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궤도시설, 철도, 교통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 자문회의, 유관기관(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 협의회 등의 개최 시기(일정) 및 세부내용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 5) 성과품 소유

-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 수행자가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8) 정책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자는 과업 착수 및 종료 시 붙임1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연구자는 연구종료 시 연구 성과품에 대한 '유사도 검사결과서(민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붙임2의 '윤리점검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 9)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I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 1. 일반사항

-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 1)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자료	계약 후 10일 이내	10부	과업수행계획 포함
중간보고자료	중간보고 개최 시	20부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 시	50부	최종보고서, 전산파일 제출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V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등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성과품 외 과업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자료는 필요한 부수만큼 발행하며, 필요가 없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회수 후 파기대책에 따라 파기한다.
- 과업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 발행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 하

## VI 예정공정표

세부 추진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궤도 운영 관련 국내 법령 조사	■	■										
궤도 운영 국내 사례 조사			■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궤도 운영 세부 방안 검토·분석					■	■	■	■				
소유·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관련 계약 검토·지원									■	■	■	■
착수·중간·최종 보고, 최종보고서 작성	■					■					■	



###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용역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2. 작성요령

####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 또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괄호 또는 페이지 하단(꼬리말)에 별도 용어 설명
-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 증빙자료 제시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덧붙임 하여 작성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한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하며, 각 면(쪽)에 일련번호(해당번호쪽/전체쪽)를 표기

- 제안서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용역사의 책임

### 3. 유의사항

#### 1)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 2)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 3) 기타

-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사항 외 별도 비용부담 불가
- 발주기관은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용역사에 설명 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나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함
-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용역사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 용역사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VIII 용역사 선정방법

### 1.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 1)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 발표일정은 별도 통보)
- 2) 제출방법 : 전자적 제출(입찰공고문에 따름)
- 3)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60)
-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2.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 1)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대학·법인 등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용역 수행 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3. 선정방법 및 절차

### 1)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나. 선정절차

-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 동점 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2)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 3)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IX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1. 기술능력평가(80점)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업체평가 (2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따라 평가	10	정량평가
	연구인력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급) 투입현황	10	
과업수행 평가 (80점)	제안서 개요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5	정성평가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20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전문가 지문, 설명회 등 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25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용역 수행경험, 전문성 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 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2)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 경영상태(1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A1, A2+, A20, A2-, A3+, A30, A3-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10
BB+, BB0, BB-	B+, B0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 ④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 경영상태 :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  
[예] (A사 점수 × 지분율) + (B사 점수 × 지분율) ...

○ 연구인력(10점)

구 분	4인 이상	3인	2인 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 철도, 교통 관련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3) 정성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과업수행 부 분 (80점)	제안서 개요	15	15	13	11	9	7
	과업 접근방법	20	20	18	16	14	12
	수행계획	25	25	23	21	19	17
	투입인력	10	10	9	8	7	6
	지원기술·사후관리	10	10	9	8	7	6

4) 평가방법

- 비계량 평가 시 점수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으로 배점함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적, 경력 등에 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함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 5)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채점 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자리는 반올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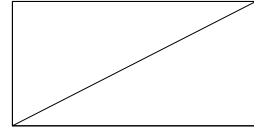
## 2. 입찰가격평가(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제안관련 서식일람>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 1>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30페이지 이내)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2> 활용)
4. 관련 분야 인력현황 (<서식 3> 활용)
5. 참여인력(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서식 4> 활용)
6. 청렴계약서 (<서식 5> 활용)
7.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서식 1>



# 과업제안서

용역명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 마련 연구」

업체(기관)명 : (인)

##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개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자본금			
	매출액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3>

### 관련 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서식 4>

## 참여인력(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령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령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연구 경력만 기재할 것.  
 2.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발주기관 확인 필) 반드시 첨부

##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